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 |    | 이사회 운영 및<br>업무감사<br>지적사항(건) | 비 고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| 건수           | 금액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1. 법인 일반업무 관련 | - 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|
| 2. 법인 수익사업 관련 | - 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3. 학교 관련      | - 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|
| 4. 부속병원 관련    | - 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사항 없음 |
| 계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
2015 년 4 월 10 일

학교법인 송의학원

감사 남상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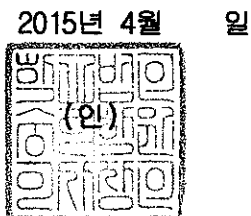
감사 안성동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022)

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송의학원  
이사장 윤순희



피감사 기관장

송의여자대학교  
총장 이 승

